【 사회복지현장 간접실습에 관한 동의서 】

목적 :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
*2020.5.20. 사회복지협회 공지사항에 준함

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습 인정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아래의 시간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실습기관과 학습자는 동의한다.

(단, 간접실습은 80시간까지만 인정 – 신법 대상자 기준)

직접실습 (　　)시간, 간접실습 (　　)시간

2020년　　월　　일

실습기관 :　　(직인)

학 습 자 :　　(인)

교육기관 :　대전총신평생교육원　(직인)